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1절
원산지 규정

제3.1조
원산지 상품

1.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상품은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가. 전적으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나. 이 장에 따른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 또는

다. 부속서 3-가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서,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

2. 추가적으로, 그 상품은 이 장의 모든 그 밖의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한다.

제3.2조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제3.1조제1항가호의 목적상, 다음의 상품은 전적으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이다.

가.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 있는 동물

- 나.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 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상품
- 다.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수렵, 밧사냥, 어로, 양식, 채집 또는 포획으로부터 획득된 상품
- 라. 당사국에 등록 또는 등기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당사국 영역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하부토양에서 획득한 어로 상품 및 그 밖의 수산물
- 마. 당사국에 등록 또는 등기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가공선박에서 라호에 언급된 상품으로만 생산되거나 가공된 상품
- 바.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 및 수확, 채집 또는 수집된 식물과 식물 생산품
- 사. 당사국의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로부터 추출된 광물과 그 밖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
- 아. 당사국 영역 밖의 해저 또는 해저 하부로부터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채취되거나 추출된 상품. 다만, 그 당사국은 그러한 수역, 해저 또는 하부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 자. 다음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 1)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제조 공정, 또는
 - 2)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러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는 원재료의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 차. 가호부터 자호까지에 명시된 상품으로만 생산된 상품

제3.3조
역내가치포함비율(RVC)

1.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은 다음 방법 중 하나에 기초하여 산정된다.

가.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기초로 한 방법(공제법)

$$\text{역내가치포함비율(RVC)} = \frac{\text{본선인도가격(FOB)} - \text{비원산지재료가치(VNM)}}{\text{본선인도가격(FOB)}} \times 100$$

나. 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기초로 한 방법(집적법)

$$\text{역내가치포함비율(RVC)} = \frac{\text{원산지재료가치(VOM)}}{\text{본선인도가격(FOB)}} \times 100$$

이 경우,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은 백분율로 표시된 역내가치포함비율이다.

본선인도가격(FOB)은 상품의 본선인도가격이다.

비원산지재료가치(VNM)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이다. 그리고

원산지재료가치(VOM)는 원산지 재료의 가치이다.

2.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다음과 같다.

가. 상품의 생산자가 직접 수입한 재료의 경우, 재료 수입 시의 운임보험료포함
가격

- 나. 상품이 생산된 영역에서 생산자가 획득한 재료의 경우, 화물운송비, 보험료, 포장비 및 그 재료를 공급자의 창고에서 생산자의 소재지로 운송하는 데 발생한 그 밖의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거래 가치, 또는
 - 다. 자가 생산된 재료의 경우, 또는 상품의 생산자와 재료의 판매자 간의 관계가 실제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재료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일반 경비를 포함하여 그 재료의 생산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의 합계. 추가적으로, 통상적인 거래과정에서 부가되는 이윤에 상당하는 이윤액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3. 이 조에 언급된 가치는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결정된다.

제3.4조

중간재

- 1. 원산지 상품이 다른 상품의 후속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후속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는 목적상 원산지 상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되지 않는다.
- 2. 비원산지 상품이 다른 상품의 후속 생산에 사용된 경우,
 - 가. 후속 생산된 상품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산정하는 목적상 비원산지 상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만 고려한다. 그리고
 - 나. 후속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산정하는 목적상 비원산지 상품에 포함된 원산지 재료만 고려한다.

제3.5조

불인정 공정

- 1. 이 장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의 공정은 원산지 상품 지위

부여의 목적상 불인정 공정으로 간주된다.

- 가.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상품이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공정
- 나. 포장의 변경, 또는 포장물의 해체 또는 조립
- 다. 세탁, 세척, 먼지·녹·기름·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 라. 직물의 다림질 또는 압착
- 마. 단순 페인팅 및 광택 공정
- 바.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 사. 병·캔·플라스크·가방·케이스·상자로의 단순 배치, 카드 또는 판 위에 고정,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 포장 공정
- 아. 다른 종류인지에 관계없이 생산품의 단순 혼합
- 자.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부품의 단순 조립, 또는 생산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 차. 동물의 도살
- 카. 과일, 견과류, 채소 및 갑각류의 탈피, 씨 제거 및 탈각
- 타.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 파. 건조, 염장(또는 염수장), 냉장 또는 냉동, 또는
- 하. 가호부터 파호까지에 명시된 둘 이상의 공정의 조합

2. 해당 상품에 행해진 공정이 제1항의 의미 내에서 불인정 공정으로 간주되는지를 결정하는 경우, 그 상품에 대하여 당사국에서 수행된 모든 공정이 함께 고려된다.
3. 이 조의 규정은 비원산지 재료로 생산된 상품에 적용될 것이다.
4. 이 조의 목적상,
 - 가. **단순**이란 특별한 기술, 또는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 나. **단순 혼합**이란 특별한 기술, 또는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하나 화학 반응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 다. **화학반응**이란 분자 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분자 내 결합의 생성, 또는 분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 변경을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만들어내는 가공(생화학 가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6조

누적

1. 한쪽 당사국 영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로 여겨진다.
2.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자가 수행한 생산은 그 당사국 또는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의 하나 이상의 생산자의 생산에 누적될 수 있다. 이 경우 상품에 결합된 재료의 생산은 그 생산자가 수행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그 상품은 제3.1조에 따라 수립된 요건과 이 장의 모든 그 밖의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3.7조 최소허용수준

1. 부속서 3-가에 따라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었으며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제3.3조에 따라 결정된 그 상품의 가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진다.

가. 그러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모든 적용 가능한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을 위해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포함된 경우, 그리고

나. 그 상품이 이 장의 모든 그 밖의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 제1항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제1류부터 제14류까지에 규정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 그리고

나. 비원산지 재료가 이 조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되고 있는 상품의 소호와 다른 소호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제15류부터 제24류까지에 규정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

3. 제1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규정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에 적용되지 않는다.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분류된 상품은, 그 상품의 세번을 결정하는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되고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 섬유 또는 원사의 총중량이 그 상품 중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진다.

제3.8조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

1. 특혜관세대우 부여의 목적상 상품 또는 재료가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인지를 결정할 때, 모든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는 다음에 의하여 구별한다.

가. 각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의 물리적 분리, 또는

나.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서 인정되는, 또는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에 의해 달리 인정되는, 평균법, 후입선출법 또는 선입선출법과 같은 재고관리 기법의 사용

2. 특정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선택된 재고관리기법은 그 재고관리기법을 선택한 인의 회계연도 동안 그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용된다.

제3.9조 세트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일반해석규칙 3에 정의된 세트는 그 세트의 모든 구성요소가 원산지 상품인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트가 원산지 상품과 비원산지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그 세트는 전체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다만, 제3.3조에 따라 결정된 비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그 세트의 총 가치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10조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수입 시 상품과 함께 인도된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원산지는

가. 그 상품이 세번변경 요건의 적용대상인 경우, 고려되지 않는다. 그리고

- 나. 그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의 적용대상인 경우, 그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산정할 때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재료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

다만,

- 가. 그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는, 송장에 명시되어 있거나 별도로 확인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상품과 별도로 송장이 발급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 나. 그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수량과 가치는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제3.11조

소매용 포장재료 및 용기

1. 포장재료 및 용기가 상품과 함께 분류되는 경우, 상품의 소매용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의 원산지는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는다. 다만,
 - 가. 제3.1조제1항가호에 규정된 대로, 그 상품은 전적으로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어야 한다.
 - 나. 제3.1조제1항나호에 규정된 대로, 그 상품은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되어야 한다. 또는
 - 다. 그 상품은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세번변경 요건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
2.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소매용으로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의 가치는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고려된다.

제3.12조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

수송 중인 상품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된 포장재료 및 용기는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고려되지 않는다.

제3.13조

간접재료

1.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를 결정하는 목적상, 제2항에 정의된 간접재료의 원산지는 고려되지 않는다.
2. 간접재료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거나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도 그 일부를 구성하지도 않는 물품을 말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 가. 연료, 에너지, 촉매제 및 용제
 - 나.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를 위하여 사용된 설비, 장치 및 보급품
 - 다.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장비 및 보급품
 - 라. 도구, 형판 및 주형
 - 마.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 및 재료
 - 바.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 그리스, 혼합물 및 그 밖의 재료, 그리고
 - 사. 상품에 결합되지는 않으나 그 상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상품

제3.14조
직접 운송

1. 원산지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원산지 상품은 양 당사국 간 직접 운송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상품은 수출 당사국에서 수입 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여겨진다.

가. 비당사국의 영역을 통과하지 않고 운송된 상품, 그리고

나. 그러한 비당사국에서의 환적 또는 일시 보관에 관계없이, 다음을 조건으로 관세 당국의 통제하에 하나 이상의 비당사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상품

1) 그 상품은 그러한 비당사국에서 거래되거나 교역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2) 그 상품은 그러한 비당사국에서 하역 및 재선적, 재포장,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않아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준수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입증된다.

가. 경유 또는 환적의 경우,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국으로부터 수입국으로의 운송을 증명하는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복합운송이나 결합운송 서류와 같은 운송 서류, 그리고

나. 보관의 경우,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국으로부터 수입국으로의 운송을 증명하는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복합운송 또는 결합운송 서류와 같은 운송 서류와 더불어 그 비당사국의 국내 법률에 따라 이 작업을 승인한 관세 당국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행한 서류

제3.15조

역외가공

제3.1조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품은 한국에서 수출되고 그 후 한국에 재수입된 재료에 대하여 한국 밖에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쳤다 하더라도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진다. 다만, 그 작업 또는 가공은 부속서 3-나에 따라 당사국들이 지정한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2절

원산지 절차

제3.16조

일반 요건

1. 한국의 원산지 상품이 에콰도르로 수입 시, 그리고 에콰도르의 원산지 상품이 한국으로 수입 시 다음의 원산지 증명 중 하나를 제출하면, 수입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협정의 혜택을 받는다.

가. 제3.17조에 제시된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 또는

나. 제3.18조에 언급된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서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의미 내에서의 원산지 상품이 제3.20조에 명시된 경우, 위에 언급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이 협정의 혜택을 받는다.

3. 원산지 증명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의 하나 이상 상품의 단일 선적에 적용될 수 있다.

4. 원산지 증명은

가. 양 당사국 간 합의된 인쇄본 또는 전자본으로 작성되며, 그에 대한 서명 및 관인은 수기로 또는 전자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나. 영어로 작성된다.

제3.17조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

1.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나 생산자의 책임하에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이 서면으로 작성한 신청에 대하여,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발급된다.

2. 원산지 증명서는 부록 3-가-1에 언급된 서식으로 작성된다.

3.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해당 상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장의 그 밖의 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든지 제출하도록 준비한다.

4.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권한 있는 당국은 상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장의 그 밖의 요건 충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목적상, 권한 있는 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할 권리 및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계좌에 대한 조사나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그 밖의 모든 점검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해당 당국은 또한 양식이 적절하게 작성되도록 보장한다. 특히, 권한 있는 당국은 상품의 설명을 위하여 지정된 빈칸이 모든 부정한 추가사항의 가능성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5. 원산지 증명서는 선적 전이나 선적 시, 또는 선적일을 포함하여 달력상의 7일 내에 발급된다.

6. 원산지 증명서가 불가항력, 비자발적인 오류, 누락 또는 그 밖의 유효한 사유로

인하여 선적 전이나 선적 시, 또는 선적일을 포함하여 달력상의 7일 내에 발급되지 않은 경우, 원산지 증명서는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소급 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소급하여 발급될 수 있다.

7. 원산지 증명서가 도난, 분실 또는 사고로 멸실된 경우, 수출자나 생산자는 서면으로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진정 등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전에 발급된 원본이 사용되지 않은 것이 입증되었어야 한다. 진정등본은 “(날짜)에 발급된 (번호)번 원산지 증명서 원본의 진정등본”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기재된 날짜부터 유효기간이 계산되도록 한다.

8.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각 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그 밖의 가능한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3.18조

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1. 원산지 신고서는 당사국의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2.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인증수출자는, 해당 상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장의 그 밖의 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든지 제출하도록 준비한다.
3. 원산지 신고서는 인증수출자가 송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 3-가-2에 제시된 신고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인장을 찍거나 인쇄하여 작성된다.
4. 당사국은 송장이 비당사국에서 발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거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산지 신고서는 비당사국에서 발급된 송장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대하여 제공되지 않는다.
5. 원산지 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원본 서명이 수기로 기재된다. 그러나, 제3.19조의 의미 내에서의 인증수출자는 그러한 신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다만, 그 수출자는

인증수출자임이 확인되는 원산지 신고서에 대하여 그 인증수출자가 수기로 서명한 것과 같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면 약속을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해야 한다.

6. 원산지 신고서는 관련된 상품이 수출되는 때, 또는 원산지 신고서가 관련된 상품의 수입 후 2년 이내에 수입 당사국에서 제출된다는 조건으로 수출된 후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작성된다.

제3.19조

인증수출자

1.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에 따라 상품을 빈번하게 선적하는 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라 한다)가 해당 상품의 가치에 관계 없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인증할 수 있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상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장의 그 밖의 요건 충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보증을 권한 있는 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

2. 권한 있는 당국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3. 권한 있는 당국은 인증수출자에게 인증 번호를 부여하며, 이 번호는 원산지 신고서에 기재된다.

4. 권한 있는 당국은 인증수출자에 의한 인증의 사용을 감독한다.

5. 권한 있는 당국은 언제든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한 당국은 인증수출자가 제1항에 언급된 보증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거나, 제2항에 언급된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 또는 달리 인증을 부정확하게 사용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제3.20조

원산지 증명의 면제

원산지 증명은 다음의 경우 요구되지 않는다.

- 가. 수입이 이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대우의 신청을 규율하는 당사국 국내법의 준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수행되거나 계획된 것이라고 수입 당사국이 여기지 않는 한, 그 수입의 관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 또는 수입 당사국의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수입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또는
- 나. 수입 당사국이 수입자에게 원산지를 증명하는 원산지 증명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상품인 경우

제3.21조

원산지 증명의 효력

1. 원산지 증명은 수출 당사국에서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일부터, 또는 원산지 신고서 작성일부터 12개월 동안 유효하다. 그러한 원산지 증명은 수입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언급된 기간 내에 그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제출된다.
2. 제1항에 명시된 제출 마감일 후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제출된 원산지 증명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정해진 마감일까지 이들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특혜관세대우의 적용 목적상 수리될 수 있다.

제3.22조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1.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자국 영역의 수입자에게 다음을 요구한다.

- 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적시하는 서면 진술을 세관 신고 시

유효한 원산지 증명에 근거하여 작성할 것

나. 가호에 언급된 진술의 작성 시 원산지 증명서를 소지할 것

다. 적용 가능한 경우, 제3.14조에 수립된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할 것, 그리고

라. 요구되는 경우, 유효한 원산지 증명 또는 그 사본, 그리고 다호에 언급된 서류를 관세 당국에 제출할 것

2. 수입자가 진술의 근거가 된 원산지 증명이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수입자는 각 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정정된 진술을 작성하고 부담해야 할 관세를 납부한다.

3. 수입자가 이 장에 따른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수출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가 거부된다.

제3.23조

수입 후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상품이 수입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었을 때 원산지 상품이었으나 그 상품의 수입자가 수입 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수입자가 수입 당사국에 다음을 제출하면, 그 수입 당사국의 국내법에 명시된 기간 내에 또는 수입일 후 1년 내에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상품에 특혜관세대우가 부여되지 않은 결과로 초과 납부한 관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가. 수입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른, 그 상품이 수입 시에 원산지 상품이었다는 서면 또는 전자 신고서 또는 진술서

나.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었음을 입증하는 원산지 증명 원본 또는 그 사본, 그리고

다. 수입 당사국이 요구할 수 있는, 그 상품의 수입과 관련된 그 밖의 문서

제3.24조

기록 유지 요건

1. 원산지 증명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고 이 장에 따른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기록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가. 수출된 상품의 구매, 비용, 가치 및 그에 대한 지불과 관련된 서류

나. 수출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간접재료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 비용, 가치 및 그에 대한 지불과 관련된 서류

다. 수출되었던 형태로의 상품의 생산과 관련된 서류, 그리고

라.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문서

2. 수출자와 생산자, 그리고 권한 있는 당국과 가능한 기관은 원산지 증명이 발급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을 원산지 증명의 발급일부터 최소 5년의 기간 동안 보관한다.

3.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는 원산지 증명의 사본을 포함하여 수입과 관련된 기록을 그 상품의 수입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언급된 기록 및 서류는 각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형태로 보관될 수 있다.

제3.25조
불일치 및 형식적 오류

1.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하는 목적상 관세 당국에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 간 사소한 불일치가 발견되더라도, 그러한 서류가 제출된 상품에 상응한다는 것이 적절히 입증된 경우, 그 사실만으로 원산지 증명서가 무효화되지 않는다.

2. 맞춤법 및 타자 오류와 같은 명백한 형식적 오류 또는 원산지 증명서의 지정된 칸으로부터의 돌출은 이러한 오류가 이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의심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 경우, 이 서류가 거부되는 원인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제3.26조
검증

1.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의 수단으로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 가.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추가 정보 요청

 - 나.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품의 원산지 검증에 대한 지원 요청, 또는

 - 다. 설비, 상품의 생산과정 및 회계서류를 포함하여 제3.24조에 언급된 기록을 검토하기 위하여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공무원이 동행하는,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검증 방문

2. 제1항에 따른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과 그 응답으로 제공된 모든 정보는 영어로 작성된다.

3. 제1항가호의 목적상,

가. 수입 당사국이 작성한 추가 정보에 대한 서면 요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요구받은 정보 및 서류를 제공해야 하는 기간은 서면 요청의 접수일부터 30일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더 긴 기간이 될 것임을 적시할 것이다. 그리고

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가호에 언급된 기간 내에 요구받은 정보 및 서류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검증을 완료하기 전에 고려될 서면 의견 또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라는 서면 통보를 최소 30일 간 제공한 후 해당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4.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제1항나호에 따라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가. 그 당국은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다음을 제공한다.

1) 검증에 대한 그러한 지원을 요청하는 이유

2) 그 상품의 원산지 증명 또는 그 사본, 그리고

3) 그러한 요청의 목적상 필요할 수 있는 정보 및 서류

나.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사실 및 조사결과를 포함한 영문 서면 진술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이용 가능하게 된 증명 서류를 제공한다. 이 진술에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와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고 이 장에 따른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분명히 적시한다.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경우, 그 진술은 그 상품이 어떻게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였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포함한다. 그리고

다.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요청의 접수일 후 150일 내에 서면 진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제공된 서면 진술이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수입 당사국은 관련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5.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제1항다호에 따라 검증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가. 검증 방문 수행 전에, 수입 당사국은 자국의 세관을 통하여,

1) 방문할 사업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그리고 다른 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방문 수행 의사에 대한 서면 통보를 전달한다. 그리고

2) 방문할 사업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서면 동의를 얻는다.

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가호에 따른 통보의 수령부터 30일 내에 제안된 검증 방문에 대한 서면 동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통보를 한 당사국은 관련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다. 가호에 따른 통보를 수령하는 경우, 그러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통보의 수령부터 15일 내에, 검증을 수행하는 당사국에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제안된 검증 방문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가진다. 이 연장은 수입 당사국 및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된다.

6. 수입 당사국은 검증 개시 후 12개월 내에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하여, 수입자와 수출 당사국에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에 대한 결정과 더불어 그 결정에 대한 사실관계 판명 및 법적 근거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7. 수입 시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품의 원산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그 상품은 검증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증금 또는 관세의 납부 후 반출될 수 있다. 검증 결과 그 상품이 이 장에 따른 요건을 준수함이 확인되면 납부된 보증금 또는 관세는 환급된다.

8.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품이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이미 결정했을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상품이 이 장에 따른 요건을 준수한다고 입증되기 전까지

그와 동일 상품의 모든 후속 수입에 대하여 수입자에게 특혜관세대우를 정지할 수 있다.

9. 한쪽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요청된 모든 정보, 증명 서류 및 그 밖의 모든 관련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전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3.27조

벌칙

각 당사국은 이 장과 관련된 자국의 법과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형사상, 민사상 또는 행정상의 벌칙을 부과하는 조치를 유지한다.

제3.28조

특혜관세대우의 거부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거부하거나 미납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가. 상품이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또는

나. 상품의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특혜관세대우를 획득하기 위한 관련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못했을 경우

제3.29조

비당사국 송장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송장이 발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산지 증명을 거부하지 않는다.

제3.30조

통과 또는 보관 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

당사국은 이 장의 규정을 준수하고 그 당사국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에 다음에 해당하는 원산지 상품에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한다.

- 가. 제3.14조에 따라 그 당사국을 통과 중이었던 경우, 또는
- 나. 세관 통제에 따라 수입 당사국 영역의 보세창고에 임시 보관 중이었던거나 자유 지역 내에 있었던 경우

다만, 그 당사국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제3.22조에 따른 유효한 특혜관세대우 신청이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3.31조

권한 있는 당국 간 협력

1. 각 당사국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권한 있는 당국과 가능한 기관의 명칭, 견본 서명 및 관인을 제공하며, 모든 변경은 그러한 변경이 발효될 날짜를 적시하여 사전에 충분히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자국이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서의 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자국의 안전한 웹사이트를 유지하는 경우,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2. 양 당사국은 갱신된 정보 또는 인증수출자 목록을 안전한 웹사이트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그러한 정보 또는 목록은 다음을 포함한다.

- 가. 인증수출자의 법적 이름
- 나.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

- 다. 인증의 발급일 및 적용 가능한 경우, 인증의 만료일, 그리고
 - 라. 최소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류 수준에서, 인증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 목록
3.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 전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정보를 통보한다.
4. 이 장의 적절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원산지 증명서 또는 원산지 신고서의 진정성 및 그러한 서류에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할 때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하여 서로 지원한다.

제3.32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양식이란 정기적인 방류, 급식, 천적으로부터의 보호 등과 같이 생산 증대를 위하여 사육 또는 성장 과정에 개입하여, 어류, 연체동물, 갑각류,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 및 수생식물을 포함한 수생생물을 알, 치어, 작은 물고기 및 유생동물 같은 종자로부터 기르는 것을 말한다.

운임보험료포함가격이란 수입국으로 들어오는 항구 또는 반입지까지의 보험비용 및 운임을 포함한 원산지 국가의 상품 가격을 말한다.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에콰도르의 경우, 생산통상투자수산부 또는 관세청, 또는 그 승계기관

관세가격이란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수출자란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며 상품을 수출하는 인을 말한다.

본선인도가격이란 운송 수단과 관계없이, 해외 최종 선적 항구 또는 장소까지 드는 운송 비용을 포함한 상품의 본선인도가격을 말한다.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란 상업적 목적으로 호환 가능하고 그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란 수입, 경비, 비용, 자산 및 부채의 기록, 정보의 공개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인정된 컨센서스 또는 실질적이고 권위 있는 지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은 세부 표준, 관행 및 절차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적용을 위한 폭넓은 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

상품이란 모든 제품, 생산품, 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동일 상품이란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 상품 자격을 부여하는 특정한 원산지 규정과 관련된 모든 면에서 동일한 상품을 말한다.

수입자란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며 상품을 수입하는 인을 말한다.

재료란 부품, 원료, 원재료, 부분품 또는 조각을 포함하여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상품을 말한다.

비원산지 상품 또는 비원산지 재료란 이 장에 따른 원산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원산지 재료란 제3.1조에 따른 원산지 자격을 갖춘 재료를 말한다.

생산자란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의 생산에 종사하는 인을 말한다. 그리고

생산이란 상품의 재배, 사육, 추출, 채집, 수집, 채굴, 수확, 어로, 덧사냥, 수렵, 제조, 가공

또는 조립을 말한다.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1부
일반 주해

1. 품목별 원산지 규정은 제3.1조제1항다호에 정의된 대로, 생산 과정에서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된 상품에 적용된다.
2. 류, 호, 또는 소호에 적용되는 품목별 원산지 규정은 그 류, 호, 또는 소호의 맞은편에 규정된다.
3. 이 부속서에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해석 목적상,
 - 가. **부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부를 말한다.
 - 나. **류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2단위를 말한다.
 - 다. **호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4단위를 말한다.
그리고
 - 라. **소호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6단위를 말한다.
4. 다음의 정의가 이 부속서에 적용된다.
 - 가. **완전생산기준(WO)**이란 제3.2조에 규정된 대로 전적으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는 경우를 말한다.
 - 나. **2단위 세번변경기준(CC)**이란 류의 변경을 말한다. 즉, 비원산지 재료는 상품의 품목분류와 다른 류에 분류되어야 한다.

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이란 호의 변경을 말한다. 즉, 비원산지 재료는 상품의 품목분류와 다른 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라.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이란 소호의 변경을 말한다. 즉, 비원산지 재료는 상품의 품목분류와 다른 소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마.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은 제3.3조에 규정된 대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을 말한다.

5. 일부 경우, 제1열의 기재사항이 “ex”로 시작하면, 이는 제3열의 품목별 원산지 규정이 제2열에 기술된 그 소호 또는 호의 일부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6. 품목별 원산지 규정이 류, 호 또는 소호 수준에서 세번을 제외하는 경우, 그 제외된 세번에 분류된 재료는 원산지 재료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속서 3-나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1. 대한민국의 헌법상 위임 및 안보 이익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증진을 위한 양 당사국의 약속, 그리고 그 세계적 목표를 향한 남북한 간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가 설치된다.

2. 위원회는 양 당사국의 공무원들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 후 2년 내에 회합하며, 그 후 최소 연 1회 또는 상호 합의하는 대로 어느 때나 회합한다.

3. 위원회는 한반도의 여건을 검토하고,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또한 역외가공지역에서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한다.

부록 3-가-1
원산지 증명서

1.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증명서 번호: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과 에콰도르 간 전략적경제협력협정 특혜관세 (원산지 신고 및 증명 병용) 한국-에콰도르 SECA 양식</p> 발행국 _____ (국가)		
2.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5. 비고:		
3. 수입자의 이름 및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4. 운송 수단 및 경로 (아는 범위까지 기재합니다): 출항일: 선박/항공/기차/차량 편명: 하역항:					
6. 품목번호	7. 상품명	8. HS 번호 (6단위)	9. 원산지 기준	10. 총 중량 또는 그 밖의 단위	11. 송장 번호 및 날짜
12. 수출자 신고: 아래의 서명자는 위의 세부사항과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모든 상품은 다음 국가에서 생산되었으며, _____ (국가) 다음 국가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하여 한국-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에 규정된 원산지 요건을 준수함을 신고합니다. _____ (수입국) _____ (장소 및 날짜, 권한 있는 서명권자의 서명)			13.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가능한 기관의 증명: 여기에 기재된 정보가 사실이며, 기술된 상품이 한국-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에 규정된 원산지 요건을 준수함을 증명합니다. _____ (장소 및 날짜, 이름,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가능한 기관의 서명 및 관인)		

한국과 에콰도르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

원산지 증명서 작성을 위한 설명

(원산지 증명서 작성을 위한 설명을 기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상응하는 특혜관세대우를 요청하기 위한 목적상, 이 서류는 상품의 생산자나 수출자 또는 그에게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이 타자로 작성하고,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가능한 기관이 발급한다. 이 서류에 굵힘, 삭제 또는 수정이 있는 경우 유효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원산지 증명서 작성의 목적상,

증명서 번호: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가능한 기관이 부여한 연속적인 일련 번호와 일치한다. 이 란은 당국 또는 기관에 의해서만 작성되어야 한다.

제1란: 수출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기재한다.

제2란: 생산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기재한다. 이 정보의 비밀 유지를 바라는 경우, “요청에 따라 제공 가능” 이라고 기재하는 것은 수용 가능하다.

제3란: 수입자 또는 수하인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기재한다.

제4란: 운송 수단 및 경로를 작성하고, 출발일, 운송수단의 편명 및 하역항을 명시한다.

제5란: 추가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조건에서 비고는 아래와 같다.

조건	비고
비당사국 운영자가 상품에 대한 송장을 발급한다	“비당사국 송장”
원산지 증명서가 소급하여 발급된다	“소급 발급”
진정 등본이 발급된다	“(날짜)에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 원본의 진정등본”

제6란: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제7란: 각 상품의 품명을 기재한다. 품명은 그 상품을 검사하는 세관 공무원이 상품을 식별할 수 있고, 그 상품을 송장 품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세하게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제8란: 제7란에 기술된 각 상품에 대하여,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세번 6단위까지 기재한다.

제9란: 수출자는 제9란에 상품이 특혜관세대우를 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원산지 기준을 다음의 표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해야 한다.

원산지 기준	제9란에 기입
가. 제3.1조제1항가호에 따라 전적으로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WO”
나. 제3.1조제1항나호에 따라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	“PE”
다. 제3.1조제1항다호에 따라 부속서 3-가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상품 - 세번변경 - RVC - 기타	“CTC” “RVC” 예) “CTC+RVC” , “CTC 또는 RVC”

제10란: 킬로그램으로 표시된 총 중량이 이란에 기입되어야 할 것이다. 관례적인 경우, 정확한 수량을 표시하는 그 밖의 측정 단위(예: 부피)가 사용될 수 있다.

제11란: 송장 번호 및 날짜가 이란에 기입되어야 할 것이다. 비당사국 운영자가 상품에 대한 송장을 발급하여 상업용 송장의 번호 및 날짜를 알 수 없는 경우, 수출 당사국에서 발급된 상업용 송장 원본의 번호 및 날짜가 이란에 명시된다.

제12란: 이란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 및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한다.

제13란: 이란은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가능한 기관의 권한 있는 인이 작성 및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하며, 관인을 찍는다.

부록 3-가-2
원산지 신고서¹

아래에 문안이 제시된, 제3.18조에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는 각주에 따라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주가 기재될 필요는 없다.

“이 서류(인증 번호² _____)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의 인증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들 상품이 _____의³ 한국-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 특혜원산지 상품임을 신고한다.”

.....
(장소 및 날짜⁴)

.....
(수출자의 서명, 또한 이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성과 이름이 정자체로 명시되어야 한다)⁵

¹ 송장 신고서는 수출자가 송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타자로 치거나, 인장을 찍거나 인쇄하여 작성된다.

² 이 난에는 인증수출자의 인증 번호가 기입된다.

³ 상품의 원산지가 표시된다(한국, 에콰도르). ISO-Alpha-2 코드(KR, EC)의 사용은 허용된다.

⁴ 이 표시는 그 정보가 문서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생략될 수 있다.

⁵ 인증수출자가 서명하도록 요구되지 않는 경우, 서명의 면제는 또한 서명인의 성과 이름의 작성에 대한 면제를 의미한다.